

의안번호	제 183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6월 9일 (제340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15년 6월 9일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83
----------	-----

제안연월일 : 2015. 6. 9.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

## 1. 제안이유

- 2006년 9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어 충북 소재 세명대를 포함한 일부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지역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지난 4월3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함.

## 2.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 ※ 붙임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 3. 건 의 처

-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및 소속 위원,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및 원내대표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정의화 국회의장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적 저출산 현실에 따른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어,  
현재 5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으며 충북 소재 세명대학교를  
포함, 7개 지방대학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비수도권 주민들은 안도감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은 6월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며, 자립형 지방화 촉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1)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符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 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중요 거점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바, 만약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문화적 격차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160만 충청도민의 의지를 모아 정중히 촉구 드립니다.

2015년 6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